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-1753호

2024년 상반기 노원구 동행일자리 참여자 모집

2024년도 상반기 노원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20.



1 모집 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상반기 노원구 동행일자리사업
- 모집인원 : 222명(28개 사업)
- 신청기간 : 2023. 11. 20.(월) ~ 12. 1.(금) 09:00~18:00 (* 12:00~13:00 점심시간 및 주말제외)
- 근무기간 : 2024. 1. 17. ~ 2024. 6. 30.
- 사업내용 : 붙임의 사업목록 참조
 - * 청년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.1.17.이후 출생)만 지원가능
- 신청방법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 - *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 중복신청 불가
- 임금기준 : 시급 9,860원, 식비 6,000원 별도

근로시간	3시간	4시간	6시간	8시간	비고
일당기준	30,000원	40,000원	60,000원	79,000원	- 주·월차수당, 식비 별도 - 일급 : 천원 단위 올림

- 근로조건 : 1일 3~8시간, 주 5일(만 65세 이상자 1일 4시간 이내), 4대보험 가입
 - *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및 기간 조정 가능

2 신청 자격

-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하고, 결격사유가 없는 노원구민
-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 -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
 -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혹은 재산이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자

참여배제 대상(접수일 기준)

▶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
※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

▶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이 4억6천9백만원 초과인 자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 중위소득 (80%)	1,782,756	2,946,087	3,771,726	4,583,930	5,356,588
가구원 수	6인	7인	8인	9인	10인
기준 중위소득 (80%)	6,094,695	6,811,995	7,529,295	8,246,595	8,963,895

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(동거인 포함)

※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(연말정산 내역)으로 판단

▶ 정기소득이 있는자

-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자로 간주해 참여 배제

※ 서울 동행일자리(공공근로)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

※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, 정보화 근로사업 등 민간기업 공공근로 위탁사업 참여자, 퇴직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자 등은 예외
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해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

※ 단, 정기 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, 사업참여 기회 부여

▶ 1세대 2인 참여자

▶ 반복참여 : 2년간 2회 참여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기준)

※ 2022년 하반기 ~ 2023 상·하반기 중 2회 이상 참여시 참여 배제

※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

※ 단,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간 3회까지 참여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
▶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▶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

▶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
▶ 대학(원) 재학생(졸업예정자, 휴학생, 통신/야간/사이버대 재학생은 가능)

▶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▶ 근로 무능력자 또는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3 모집일정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3. 11. 20. (월) ~ 12. 1. (금) 09:00~18:00 (※ 주말제외)
- 접수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- 구비서류 (※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)

【필수사항】

1.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2. 노원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(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) 3부
4. 구직등록필증(노원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)

【선택사항】 - 가점대상 확인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북한 이탈주민, 장애인 및 가족, 결혼이주여성, 국가유공자, 가정폭력 피해자
- 자격 또는 경력·능력 증명서
- 여성가장(세대주)

- 미혼여성 /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/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

- ①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하거나,
-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,
- ③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, 중증장애인,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,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)을 부양하는 경우

- 선발기준 : 자격요건, 소득·재산 및 기타 가점을 합산하여 선발기준에 따라 최고점 순으로 선발
※ 사업별 요건에 따라 면접(대면 또는 전화) 또는 체력테스트 등 실시 가능
- 합격자 발표 : 2024. 1. 15. (월)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
4 기 타 사 항

-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 책임
-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, 채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대기인원 선발 가능
-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서 상 타사업 희망 체크 시 희망사업(시간조정 포함) 외 배치 가능
- 문의처 :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(☎ 2116-3476)
※ 사업상세 문의는 붙임2. 동행일자리사업 목록에 기재되어있는 부서 담당에게 문의

- 붙임 1. 2024년 상반기 노원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류 각 1부.
2. 2024년 상반기 노원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목록 1부.
3.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사업선발기준 1부. 끝.

<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사업선발기준 >

고려요소	판단 기준	가점(100)	비고
① 재산 상황 (건축물, 주택, 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억 원 미만 : 10점 • 1억 원 이상 ~ 2억 원 미만 : 7점 • 2억 원 이상 ~ 3억 원 미만 : 3점 • 3억 원 이상 ~ 4억 원 이하 : 1점 	10 (10, 7, 3, 1)	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(69백만원 공제 후 판단)
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	당해 사업 기간 포함 최근 2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: 10점 • 3개월 미만 참여 : 5점 • 3개월 이상 참여 : 3점 	10 (10, 5, 3)	공공근로 지역공동체, 어르신 일자리, 장애인 일자리 등
③ 세대주	세대주 여부	10 (10, 0)	
④ 부양가족 수 (세대주, 동거인 제외)	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명 이상 : 15점 • 2명 : 10점 • 1명 : 5점 • 없음 : 0점 	15 (15, 10, 5, 0)	주민등록표 확인
⑤ 취업 취약계층	북한 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성 세대주,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·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	15(15, 0)	중복가점 불가
⑥ 자격요건	당해 분야 자격 소지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격증 2개 이상 : 10점 • 자격증 1개 : 5점 • 자격증 없음 : 0점 	10(10, 5, 0)	
⑦ 사업부서 가점	참여자 경력, 인성, 태도 등 종합평가 ※ 필요 시 면접(대면 또는 전화) 및 체력 테스트 등 실시	30	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